

의안번호	2200482
의 퇴 인	한준호 의원
회 답 일	2024. 7. 3.
추 계 번호	24C08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경제적 노인 학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62억 7,700만원(연평균 52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경제적 노인 학대 대응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안 제1조의2, 제39조의22)	5,346	5,088	5,182	5,280	5,381	26,277	5,25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의2(정의)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 특수공갈, 횡령, 배임 등을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39조의22(노인학대 관련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의2(정의)	○	○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39조의22(노인학대 관련 지역사회 통합지원체 계의 구축·운영)	○	○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본 추계서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상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규모 등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안 제39조의22는 통합지원체계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구상 중인 계획 외에도 개정안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 확대로 인해 기존 노인보호 사업(피해자 상담 및 쉼터를 통한 보호 등)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도입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 여부와 사업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경제적 학대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상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규모 등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중앙노인보호기관(1개소) 및 지역노인보호기관(38개소)에 경제적 학대 대응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비·사업비·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련 연구용역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할 계획

[표 2]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사업 계획

구 분	보건복지부 사업 계획	
	내 용	지원 규모 및 단가
운영비	경제적 학대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내 경제적 학대 예방 교육 경비,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수당 등	중앙노인보호기관(1개소) 및 지역노인보호기관(38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5천만원 소요 예상 ※ 단 지역노인보호기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50% 적용
사업비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지킴이로 양성하여 경제적 학대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는 생활경제지킴이 파견사업	지역노인보호기관(38개소) 1개소당 3명의 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 ※ 지킴이에 대한 보수단가는 노인일자리 보수단가(사회서비스형) 적용
인건비	[중앙] 총 5인 충원 - 경제적 학대 대응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홍보(1인) -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2인) - 생활경제지킴이 교육 및 관리(1인) - 경제적 학대 대응 사업 총괄 관리(1인) [지역] 개소당 2인 충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관리(1인) - 경제적 학대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생활경제지킴이 파견사업 운영·관리(1인)	2022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보수단가(연간 33,256천원)에 매년 3%의 보수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 ※ 지역노인보호기관의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50% 적용
연구용역	경제적 학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개정법률 시행 첫째 5천만원 소요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경제적 학대 발굴 및 신속 대응, 생활경제지킴이 파견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개정법률 시행 첫째 3억원 소요

자료: 보건복지부

-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계획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
 - (운영비)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추계기간 매년 중앙노인보호기관(1개소) 및 지역노인보호기관(38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사업비)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지역노인보호기관 1개소당 3명의 지킴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지원 단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활동비 단가(주휴수당 포함 월 76.1만원)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¹⁾

1)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활동비 단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9.4만원으로 유지되다가 2024년 63.4만원으로 인상(만근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76.1만원)되었으므로, 추계기간 2024년 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

- (인건비)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용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4급) 4호봉(기본급 월 226.2만원)을 기준으로 2022~2024년 해당 단가의 연평균 증가율(3.11%)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되(수당은 동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만 있는 것으로 가정²⁾), 총 급여는 퇴직급여적립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기관부담 요율(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가산하여 산정
- (연구용역비)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추계기간 중 첫해에만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시스템 구축비)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추계기간 중 첫해에만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항목별 국비보조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추계서는 국비와 지방비 구분 없이 총재정소요 추계결과를 제시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53억 4,600만원, 2029년 53억 8,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62억 7,700만원(연평균 52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경제적 노인 학대 대응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운영비(백만원, A)	1,950	1,950	1,950	1,950	1,950	9,750	1,950
대상 기관 수(개소)	39	39	39	39	39		
단가(백만원)	50	50	50	50	50		
사업비(백만원, B)	87	87	87	87	87	434	87
지킴이(명)	114	114	114	114	114		
단가(천원)	761	761	761	761	761		
인건비(백만원, C)	2,959	3,051	3,146	3,243	3,344	15,743	3,149
충원 인력(명)	81	81	81	81	81		
단가(천원)	36,528	37,664	38,835	40,043	41,288		
연구용역비(백만원, D)	50	-	-	-	-		
시스템구축비(백만원, E)	300	-	-	-	-		
추가재정소요 (백만원, A+B+C+D+E)	5,346	5,088	5,182	5,280	5,381	26,277	5,255

주: 1.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서는 신규 충원인력이 받는 수당에 명절휴가비(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만 있다고 가정

IV. 부대의견

- 보건복지부의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개정안에 따라 기존 노인보호 사업 (피해자 상담 및 쉼터를 통한 보호 등)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